선생님우대통장특약

제1조 적용범위

선생님우대통장(이하 '이 통장'이라 합니다)은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입출금이자 유로운예금약관을 적용합니다.

제2조 가입대상

이 통장의 가입대상은 교직원인 실명의 개인으로 합니다.

제 3 조 예금과목

이 통장의 예금과목은 보통예금, 저축예금, 자유저축예금, 가계당좌 예금 중 1과목으로 합니다.

제4조 기타

이 통장 가입자는 은행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.

부 칙

구 국민은행의 국민선생님우대통장은 2002.9.23부터 이 특약을 적 용합니다.